

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해촉)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6조의 제목 "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"를 "(위원장 등의 직무)"로 하고, 동조제1항중 "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"를 "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"로 하며, 동조제2항중 "사고가 있는"을 "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중 "정기회의와 임시회의"를 "정기회와 임시회"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,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은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천한

자,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의원,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해촉)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중 "회무"를 "사무"로 하고, 동조제2항중 "사고가 있는 때에는"을 "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"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, 동조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②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 
번호 885

2001년 6월 일  
건설위원회